

## ◎고용노동부공고 제2023-292호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26일

고용노동부장관

###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,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※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

: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추가

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48)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
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
- 전자우편 : [mnjn6530@korea.kr](mailto:mnjn6530@korea.kr)
- 팩스 : 044) 202-8997

#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

입법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(☎ 044-202-899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